

2025

청원경찰법

청원경찰, 경비지도사

엠북 자격증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30분 완성, 만점 가능!
- ★ 21년간(2004~24) 기출 지문 수록
- ★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별표 종합정리
- ★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
- ★ 암기코드 제공

청원경찰법

[목차]

- 제1절 총칙(p4)
- 제2절 직무와 배치(p7)
- 제3절 임용 등(p10)
- 제4절 경비(p22)
- 제5절 근무(p28)
- 제6절 무기휴대(p42)
- 제7절 감독 등(p51)
- 제8절 면직 등(p57)
- 제9절 벌칙(p63~65)

[약어]

- 부령은 행정안전부령
- 청장은 경찰청장
- 시도청장은 시·도경찰청장
- 서장(관할서장)은 **사업장 소재지**를 관할하는
경찰서장
- 사업장은 기관, 시설, 사업장, 장소
- 시도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
특별자치도
-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

[비고]

- 하늘색 형광펜은 암기코드
- 노란색 형광펜은 빈출 지문(중요도 최상)
- 붉은색은 빈출 지문(중요도 상)

- 하늘색은 빈출 지문(3~4회)
 - 검은색은 1~2회 출제 지문
 - 회색은 출제된 적이 없는 등 중요도 낮음
- * 출제 횟수는 경비지도사 시험 기준

[참고]

- 지방경찰청(장)은 2021년부터
 시도경찰청(장)으로 명칭 변경

(Copyright) 공부혁명! 엠북(mbook.kr)

제1절 총칙

1. 목적

- 청원경찰의 직무, 임용, 배치, 보수,

사회보장을 규정해,

-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

2. 정의

가. 청원경찰

- 다음 기관의 장, 시설/사업장

경영자(청원주)가 경비부담 조건으로 경찰
배치 신청시 경비를 위해 배치

1) 국가기관/공공단체, 그 관리하 중요
시설/사업장

2) 국내 주재 외국기관

3) (대통령령이 아니라) 부령

- 선박, 항공기 등 수송시설
- 금융/보험
- 언론, 통신, 방송, 인쇄
- 학교 등 육영시설
- 의료기관
- 공공 안녕질서, 국민경제 위한 고도 경비
필요 중요 시설, 사업체, 장소
- 단, 사회복지시설 제외

나. 청원주

- 청원경찰 배치 결정 받은 자

제2절 직무와 배치

1. 직무

가) 청원주와 배치 기관/시설/사업장

(시도청장이 아니라) 서장 감독하 배치

구역만의 경비를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
따른 경찰관 직무 수행

나) 경비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직무
수행

다)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
금지

라) 모든 보고는 관할 서장에 서면 보고 전
지체없이 구두 보고하고 지시 따름

2. 배치

가) 대통령령에 따라 (문서로) 신청

- 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및 배치계획서

각 1부 첨부, 서장 거쳐 (청장이 아니라)

시도청장에 제출(신청)

- 둘 이상 시도에 배치시 주사업장 관할서장

거쳐 한꺼번에 신청 가능

나) (청장이 아니라) 시도청장은

- 배치신청받은 때 지체없이 결정해 신청인에

통지

- **기관장/경영자에 배치 요청 할 수 있다**(해야한다 아님)

(참고) 시도청장의 권한

- 청원경찰 **배치**결정, **무**기휴대여부 결정,
임용승인

다) 청원주는 신규배치시 배치지, 이동배치시

(전입지 서장이 아니라) **종전 배치지 관할**

(시도청장이 아니라) **서장에 통보**

- 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일 때
전입지 서장에 통보

제3절 임용 등

- 임용자격, 임용방법, 교육, 보수, 징계는 (부령이 아니라) 대통령령으로 정함

1. 임용

가. 임용권자

- (서장이 아니라) 청원주가 임용
- 임용시 미리 (청장이 아니라) 시도청장 승인받음

나. 임용승인신청(서)

- 1) 첨부 서류 (각1부)